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4. 9. 2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 1. 경 과

의안 제9호로 2014년 9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동 복지기능 및  
인적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연계협력을 활성화하여  
다양해지는 주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고, 주민주도로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 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7조의2)

나.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 변경(안 제7조제3항)

- 사회복지담당팀장, 보건의료담당팀장 → 사회복지 관련 팀장, 보건의료 관련 팀장(안 제7조제3항)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타구개정 : 중구 외 9개구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복지사업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 계층 발굴과 민관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동 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사항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함.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4년 복지예산은 106조원('09년 74조원)으로 전체 정부 재정 지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sup>1)</sup>, 생활고 등을 이유로 가족 사망 사건 등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3년간 언론에 보도된 생계형 사건·사고(167건) 사례분석 결과<sup>2)</sup>를 살펴보면 해당 가구의 주요 문제는 생계비(36%), 실업과 사업실패(23%), 돌봄과 간병(21%), 의료비(20%) 순으로 위기가구의 40% 이상이 중복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실직, 질병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됨.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민관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동복지기능과 인적안전망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2014. 5. 14) 한 바 있음.

1) 우리 구 2014년 복지국 예산 1,901억원(전체 구 예산 4,116억원의 46%)

2)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안」 발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신설·운영<sup>3)</sup>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을 활용한 다양한 인적·물적 복지 자원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복지대상자의 신속한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향후 동 협의체가 설치 목적에 맞게 실제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내실화하고, 교육 및 워크숍 등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3)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방안(2014.7.18)」

## 관 련 법 령

###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2.1.2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들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2.1.26.>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 또는 보호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 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